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96
------	------

제출일자 : 2025. 5. 2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청년 창업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청년  
꿈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규정(안 제11조 신설)
- 나.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2) 「지방자치법」 제15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5. 2. 21. ~ 2025.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가족정책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창업지원센터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부 칙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을 구체적 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p> <p>2. ~ 4. (생 략)</p> <p>제6조(투자 유치 등) ① ~ ③ (생 략)</p> <p>③ (생 략)</p> <p>&lt;신 설&gt;</p> <p>제11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p>	<p>제2조(정의) ----- -----.</p> <p>1. ----- ----- 제2조제2호-----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투자 유치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1조(창업지원센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창업지원 센터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창업지원센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 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으로 한다.</p> <p>제12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p>

① 구청장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경비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3억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일자리청년과 청년동행팀 박재현
연 락 처	2627-258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시행 2023. 7. 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42호, 2023. 7.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청년 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7.20.>
4. 이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투자 유치 등)**

-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청년 창업 공간 지원

3.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투자 유치 지원
4.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5. 청년 창업을 위한 소통·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④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 ① 구청장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2022. 4. 20.>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2022. 4. 20.>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2022. 4. 20.>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2022. 4. 20.>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